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자료

일시. 2023. 2. 23.(목) 10:00

장소. 서산시청 대회의실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목 차

I. 협의회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3
--------------------	---

II. 시·군 건의사항

1. 정당(정치인) 현수막 제도 개선	25
2.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건의	26
3.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적시 추진 지원 협조	27
4. 「고향사랑기부제」 정기 기부 도입 및 운영 개선	29
5.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집행 통제목 신설	34
6.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36
7.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39
8.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40
9. 시장 격리곡 매입 품종 확대	41
10.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42
11.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지원	45
12.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한 교육시설 유치	46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47
추가 1. 교육청-지자체 간 교육경비 주체 명확화	48

III. 협의회 논의 및 심의

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 촉구 대회 53
2.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55

IV. 홍보·협조사항

1.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59
2. 2023년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61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62
4. 고향사랑기부제 충청도민 기부 독려 64
5.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65
6. 2023 논산딸기 축제 66
7.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68
8.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69
9. 지역상생 시·군 기부 챌린지 추진 70
10. 남당항 명품 새조개 판매 71
11. 제19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 72

[참고자료]

1. 202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75
2.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현황 보고 77
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78

I . 협의회 추진사항

1. 건의사항 처리결과	3
--------------------	---

① 건의사항 처리결과

건의처	소 관 부 처	건의	건 명	처 리 결 과
계			24건	
소 계			3건	
충남 청도	사 복 지 회 과	'22.11	• 저소득 보훈가족 밀반찬 지원사업 시군부담 최소화 - (당초) 도비 100% → (현재) 도 30% 시군비 70% * 도비 70% 시군비 30로 부담비율 변경 건의	수용곤란
	자 행 정 치 과	'22.11	•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아산시 특례 건의	처리완료
	물 관 책 리 과	'22.11	•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추진	장기검토
소 계			21건	
충남 청도 대 민 시 군 구 협 의 회 한 국 장 수 장 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2.4	•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입법 추진 재검토	장기검토
	교육부 (학교정책과)	22.9	• 자율형 사립고 존치 정책 조속 이행	수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22.9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부패실태) 기준 건의	수용곤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22.9	•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	기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22.9	• 농어촌민박 면적기준 완화 건의	수용곤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2.9	•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영급 기준 완화 건의	수용곤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22.9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요청	수용곤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2.9	•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 현실화	수용곤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2.11	• 공공건축 건설사업관리 관계 법령개정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22.11	• 농업진흥구역 내 양곡 보관창고 한시적 허용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22.11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 개정	검토중
	국토교통부 (도로시설안전과)	'22.11	• 계룡IC 앞 입체교차로 설치 건의	검토중
	인사혁신처(성과급여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22.11	• 공무원 출장여비 식비 및 매식비(급량비) 인상 건의	검토중

대민시군구협 한국의장수장회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건강정책과)	'22.11	• 건강보험 정부지원 '종료'관련 법 개정 건의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22.11	• 농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지정 확대	검토중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2.11	• 노인일자리 참여자 사업량 추가 배정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22.11	•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 지원 건의	검토중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기획단)	'22.11	• 공무원 통일적 임금체계 마련 건의	검토중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22.11	• (구)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검토중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22.11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홍보 요청	검토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22.11	•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조정 건의	검토중

－ 건의사항 처리결과(충청남도) －

1. 저소득 보훈가족 밀반찬 지원사업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11.
- 건 의 자 : 천안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보훈팀(한성대, ☎041-635-4243)
- 건의요지
 - 도 추진 사업을 시·군으로 전환 할 경우, 사전 사업설명 또는 의견 조율 절차 등 필요
 - 도 추진 순도비 100% 사업을 시·군으로 전환 시 부담 최소화 요청
 - 도와 시·군비 분담률을 도비 70%, 시·군비 30%로 부담

□ 추진사항

- 道 자체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완료('21~ '22년)
-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22.3.) 및 예산실무심사('22.10.) 시 시군 사업비 분담 등 필요성 제기
 - 道 직접 수행시 문제점 발생(대상자 관리, 서비스 질 저하 등)
- 시·군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사전 안내 및 공문 발송('22.10.)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23년 사업추진 방향 협의를 위한 시·군 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22.12월 예정) 시 상세한 사업 설명 및 의견 청취
 - 도비-시·군비 예산 분담률 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를 적용한 것으로 반영 곤란
- ^{*}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30% 부담 원칙

2. 시군구 특례지정 협조요청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11.
- 건 의 자 : 아산시장
- 소관부처 :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김상우, ☎041-635-3583)
- 건의요지
 - 도/시·군 특례협의회 신속 구성 및 협의 시 특례 소관부서
(도 건설정책과)에서 특례지정에 적극 협조 요청
 - ※ 아산시 발굴 특례 :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 특례

□ 처리상황

- 도-시군 특례발굴TF 회의(8.11., 특례구체화 및 민간전문가 자문)
- 도 건설정책과·아산시 특례 관련 부서 사전협의(10.5.)
- 아산시의회 의결(10.21.), 아산시→도 특례협의위원회 구성 요청(10.28.)
- 도/시·군 특례협의위원회 위원 추천(건설정책과아산) 및 구성(12월 초)
- 12월 초까지 특례협의위원회 구성*, 연내 회의 개최** 추진
 - * 위원 구성(12명) : 도·아산 각 6명(각 공무원3·전문가3, 아산 전문가 중 위원장 호선)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0조 : 협의회 구성요청(아산→도) 후 90일 내 협의('23.1.28.限)
- 도-시군 특례협의위원회 협의결과서 작성 및 아산시 송부(12월말)
 - ※ 시·군·구 특례지정협조 추진완료

3. [구] 충남방적부지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11.
- 건 의 자 : 예산군수
- 소관부처 : 충청남도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구차섭, ☎041-635-4062)
- 건의요지
 - (구)충남방적 공장 폐쇄로 방치된 노후 공장을 공간정비를 통한 주거 및 공동시설 조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농식품부 지원 : 농촌공간정비, 농촌공간돌봄단지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 * 충남도 지원 : 충남형 리브투게더 사업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농식품부 지원사업
 - (농촌공간정비) ‘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현장평가(11.29)를 완료하고 최종평가 후 선정(‘23. 1월중) 계획
 - ※ ‘22년 농촌협약 선정 4개 시군(아산·서산·부여·예산) 대상
 - (농촌공간돌봄단지조성) ‘22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3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발표 시 공모 추진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23년 사업지구 공모 접수 중(~ ‘22. 12. 30.)으로 공모 선정(‘23. 2월중) 계획
 - 충남도 지원사업
 - (충남형 리브투게더) ‘22년 공모사업으로 3개 시·군*에서 제출 (‘22.12.02)되어 최종 평가(‘22.12.15.)를 통한 사업지구 선정 계획
 - * 제출 시군(논산·부여·서천)
- ⇒ 각 사업별 공모 선정 후 지원규모 외 사업비는 군비 투입 추진 필요

참고 1 농촌공간정비사업(농식품부 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농촌의 축사·공장·빈집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재생 및 정주 환경 개선 지원
- 사업기간 : 5년
- 사업비 : 생활권별로 최대 180억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22년(대규모 100~250억, 소규모 50~100억)→ '23년(최대 180억원) 변경

□ 주요 사업내용

- (유해시설 철거·이전) 농촌공간전략계획에 기반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유해시설을 선정하고, 철거·이전 등 정비 추진
- (공간조성사업) 정비지구 및 이전 지구로 구분하되 지역의 여건·주민 수요·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 지원제외 : 정비·이전지구와 관련성이 낮은 사업, 단순 시설 정비(악취저감 시설 정비, 단순 유흥시설 정비 등), 공간집적화가 수반되지 않는 일자리·경제활성화 시설 조성사업은 미지원

□ 추진현황

- '22. 6.~9. : '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시·군 선정(청양, 부여, 서천)
- '22. 6. : '22년 농촌협약 3개 시·군 선정(아산, 서산, 부여, 예산)
- '22년 농촌협약 선정 시군 '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우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
※ 단,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
- '22. 11. : '22년 농촌협약 선정 시·군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점검
- 농식품부 '22. 11. 29 ~ 30. 아산, 서산, 예산 점검, '22. 12. 현장점검 결과 전문가 의견 반영(시·군) 완료

□ 향후계획

- '23. 01. : '23년 농촌공간정비사업 최종 결정(농식품부)

참고 2 농촌공간돌봄단지조성(농식품부 공모사업)

◇ 농촌주민들에게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가 주민과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돌봄 마을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22년 농촌돌봄마을 시범단지 조성 사업 지침 기준

○ 지원대상 : 돌봄마을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소재 시·군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간)

○ 지원예산 : 개소당 18,200백만원

* 국비 9,100백만원, 지방비 9,100백만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주요 사업내용

○ 농촌 돌봄마을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프로그램 개발비, 기반 시설 신규 설치 또는 기존 시설 구입·임차·리모델링 비용 지원

① 농촌 돌봄 마을: 사회적 약자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회복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자원과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지역 마을

② 시범단지 조성: 사회적 농업 및 복지 복합시설, 여가 활동·거주 주택, 주민 네트워크 시설 등

③ 돌봄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 농촌 주민, 일반인 등 대상별 적합하고, 의료·보건·식품·교육·보육·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 서비스 전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 향후계획

○ '23년 신규사업 추진계획 발표 시 공모 추진

참고 3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농식품부 공모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보육수요, 문화·여가생활 욕구 등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3년
- 사업비 : 지구당 80억원(국비 50%, 시·군비 50%)
- 입주대상 :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 주요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청년층의 수요,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형태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외 인정(30호 내외, 전용면적 85㎡미만)
- (공동보육시설) 주거단지 내 영유아 놀이·학습, 육아 품앗이, 부모 교육·정보교류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 (커뮤니티시설) 입주민과 주변 농촌 주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 설치

□ 추진현황

- ‘18. 10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시범사업 선정(서천군)
 - 임대주택 29세대, 주민공동이용시설 1개소 조성 등
 - * 29세대 : 청년형A(6세대), 청년형B(8세대), 가족형A(7세대), 가족형B(8세대)
- ‘22. 11 : ‘23년 보금자리조성사업 추진계획 발표(농식품부)
- ‘22. 12. 30. : ‘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신청(시군→농식품부)

□ 향후계획

- ‘23. 01. : ‘23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시군 선정(시군→농식품부)

참고 4 농촌 주거공간개선사업(도 자체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산재되어 있는 농촌 주거공간의 재구조화 및 은퇴·청년농 등의 유입·정착을 위한 농촌 주거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22년~2026년(5년)
- 사업비 : 2,000억원(도비 70%, 시·군비 30%)
 - * 지구당 최대 100억원 / 지구당 도비 최대 70억원
- 사업규모 : 총 20지구(시·군별 1~2지구) / 지구당 30호 내외 임대주택
 - *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 시·군(9개) 1~2지구 우선 선정 / 비대상 시·군(6개) 1지구
- 사업시행 : 시장·군수 또는 위탁시행(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LH 등) 가능

□ 주요 사업내용

- 주거시설, 공동보육시설,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조성 등
 - (주거시설) 30호 내외 신규주택조성, 빈집 리모델링 및 철거 등
 - (공동시설) 마을회관 공동육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신축 또는 리모델링
 -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오페수시설, 주차장 등 시설 개선
 - (기타지원) 노인 및 영유아 돌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 충남형 농촌 리브투게더 TF 구성·운영 통합 추진

□ 추진현황

- '22. 9. 17. :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시군 설명회 개최
- '22. 10. 7. : 농촌주거공간개선 TF 제1차 회의 개최
- '22. 10. 12. ~ 17. : “사업시행지침(안)”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실시
 - * 수요조사 결과 : 4시군(공주1, 부여1, 논산2, 서천1) 5지구 사업추진 준비
- '22. 11월 : 농촌주거공간개선사업 시군 공모(시군별 예비계획서 접수)
- '22. 12월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 사업성 평가(주거공간개선 TF)

□ 향후계획

- '22. 12월말 : 사업 대상지 선정(1차)
 - '23년~ :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총 20지구 선정

－ 건의사항 처리결과(중앙부처) －

1. 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다양화 입법 추진 재검토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4.
- 건 의 자 : 천안시장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송영기, ☎044-205-3311)
- 건의요지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22.1.13. 시행)으로 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에서 특별법 입법 추진 중
 - ※ 국회 입법절차 추진('22. 2.) 및 연중 추진 완료
 - 입법추진과정 및 다양화 방안 마련 관련,
 -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입법추진기간 연장
 - * 의회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민 투표 청구 방지를 위한 청구권 오용 방지 장치 필요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장기검토
 -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 중임

2. 농어촌민박 면적기준 완화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논산시장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신우창, ☎044-201-1590)
- 건의요지
 - 육군훈련소(논산)에 인근지역 면회객 숙박수요로 인해 농어촌민박업 활성화
 - * 농어촌민박 연면적 기준 미충족 미등록업소로 투숙객 안전에 취약
 -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민박 기준완화
 - 1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3 규모 및 시설기준을 개정
 - * 1동인 경우, 주택 연면적 230㎡ 미만을 유지하되 2동 이상인 경우, 주택 연면적 500㎡ 미만
 - 2안) 특례 인정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장 조례 제정 위임
 -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특례 인정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하여 완화할 수 있는 조항 삽입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농어촌민박은 전문숙박업이 아닌 농(준)어촌지역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남는 공간을 이용하여 숙박·취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입지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농어촌민박 규모 기준을 고려할 시 면적 기준도 과소하다고 보기 어려움
 - 대규모 민박 운영시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클 수 있으며, '21년말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연면적 평균이 150㎡수준임을 감안 시 면적을 확대할 이유도 크지 않다고 판단됨
 - * 숙박수요가 큰 지역은 지자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규모, 거주 제한이 없는 일반숙박시설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운영 가능

3. 자율형 사립고 존치 정책 조속 이행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당진시장
- 소관부처 : 교육부 학교정책과(김상덕, ☎044-203-6315)
- 건의요지
 - 자사고 제도 존치를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및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자사고 폐지’ 조문을 신속히 개정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
 - 교육부는 업무보고(‘21.7.29.)를 통해 자사고 제도 존치 방향을 발표 하였으며,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시안)을 마련 중임
 - 추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된 후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부패실태) 기준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금산군수
- 소관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김경용, ☎044-200-7632)
- 건의요지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평가 시 감점 반영 기준을 현재 평가 기간 중 징계처분 시 원칙에서 부패행위(사건) 발생 시로 변경
 - ※ 징계대상 사건의 행위시점과 처분시점의 차이에 따라 현재의 부패행위가 차년도 이후의 평가에 반영되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저하시킬 우려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필요
 - 언론보도, 감사조사 착수 등의 현황만으로 부패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미확정 사안에 대한 파악 및 자료 확보도 한계
 -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혐의를 확인한 징계를 기본으로 기관의 부패사건을 파악하고 부패실태 평가에 반영
 - 다만, 주요 부패사건이나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패 행위자(정무직, 기관장, 고위직) 관련 사건은 언론보도, 감사자료 등을 통해 부패행위(혐의)를 확인
 - 징계가 아니더라도 감사(징계요구)·수사(기소)·재판(판결) 과정에서 혐의가 확인된 사안은 종합청렴도 부패실태 감점으로 적시에 반영해 결과의 정확성·수용성을 제고하고 있음
 - ※ 평가에 기반영된 부패사건은 동일한 사유로 재반영되지 않음

5. 자연재해 재난지원금 피해보상 현실화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부여군수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현종일, ☎044-205-5314)
- 건의요지
 - 정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도(道) 차원의 피해 추가 지원 근거 마련
 - * (가칭) 충청남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제정
 - 관련 부처에 지원기준의 단순화되고 불합리한 근거 법령 개정건의
 - * 사유재산에 대한 실질적 가치 감정을 통한 보상기준 마련
 - 사유시설 피해 지원 품목 다양화
 - * 기초생활 필수품목 추가(냉장고, 세탁기 등)

□ 처리상황

- 심의결과 : 기시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제3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조례는 법령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가 판단하여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음
 - *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등
 - 사유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은 생계안정차원에서의 지원금이며, 지원금의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재난 복구 비용등의 산정)제2항에 따라 매년 사유시설 단가 고시하고 있음

6.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영급 기준 완화 건의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서천군수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이재훈, ☎044-201-4972)
 - 건의요지
 - 서천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젊은 인구 유입을 위해 대규모 관광사업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나,
 - 서천군에 대규모 관광개발을 검토 중인 지역의 산림 대부분이 임상도 5영급 이상인 지역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음
 - ‘09년 당시 4영급(31년~40년)인 기준을 현행 5영급(41년~50년)으로 바꾼 것으로, 개정 이후 14년 경과에 따라 4영급지가 5영급지가 된 상황임
 - 이에 지역관광 발전을 위해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의 자연보전 지역 판정요소인 임상도(영급) 기준완화 건의
- * (현행) 임상도 5영급이상 지역 → (개정) 임상도 6영급이상 지역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5영급 이상의 산림지역이 계속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건의 내용에서는 5영급 이상의 산림이 계속 증가하여 개발 가능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지만,

- 매년 산지전용, 수종갱신, 피해목, 솎아베기(간벌) 등 벌채면적이 증가*
하는 점을 고려하면, 5영급이상 산림이 지속 증가한다고 볼 수 없음
- * ‘20년도 산림청 입목벌채(허가)실적은 벌채면적 128천ha(전년대비 27%증가),
벌채양 5,457천㎥(5.3% 증가)이며, 숲가꾸기 예산증가로 지속 증가
- 임상도 기준을 6영급으로 완화하는 경우 보전대상 지역 대폭 축소
- 보전지표의 임상도를 6영급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95% 이상이 잠재적 개발대상으로 변질 우려
- * 전국 산림면적(629만ha) 중 5영급 이상의 비중은 38%(241만ha)이고 6영급 이상은 5%(34만ha)에 불과하여(‘20년도 산림청 통계, 참고2)
- 지자체 재량으로 판정기준 완화 등 가능
- * 토지적성평가지침에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으로 제시한 임상도 등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 * 임상도(5영급 이상인 지역)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정기준을 완화하거나{지침 3-1-5(5)}, 지역여건이나 계획의 특성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음{지침 3-3-1(1)}
- 이처럼 5영급 산림비중의 증가가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6영급 등으로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으로 완화할 경우 잠재적 개발가능지의 급증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며,
- 개별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건의내용을 수용하기 곤란함

7.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개선요청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청양군수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김광희, ☎044-201-1732)
- 건의요지
 - 농어촌공사에서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영농희망자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수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은 농지를 영농희망자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지 소유주가 토지에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토지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이는 임차자가 시설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업경영 중 파산 등 사유로 시설 철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 농업인들이 농지 임차를 하여 시설하우스 설치를 할 때, 철거가 불가능할 경우 농어촌공사 또는 정부에서 철거비 등 지원하도록 건의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임대수탁농지의 경우 소유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고, 법적 분쟁 및 민원 예방을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지침 내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위한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음
 - 시설물 설치와 철거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철거비를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
 - 다만, 철거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인 장치로서 임차인에게 농지 원상회복을 위한 보증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경우에도 농업용 시설물을 설치할 때 현금예치 또는 이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8.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피해 보상 현실화

□ 건의개요

- 건의시기 : 2022. 9.
- 건 의 자 : 청양군수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이현경·최종순, ☎044-201-2990,1794)
- 건의요지
 - 농작물 피해액의 80퍼센트 보장
 - 손해평가 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농작물재해보험 자동갱신제도 도입
 -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및 보험료 할증 폐지 건의
 - 재난지원금(대파대, 농약대) 대폭 인상 현실화

□ 처리상황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① 농작물 피해액의 80퍼센트 보장 : 수용곤란
 -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특성상 소규모의 손해에 대하여는 농가가 책임지도록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비율 산정(통상 20%)
 - 피해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보험금 지급 시 손해평가 비용 급증 및 농가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 유발 우려가 있고,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재해복구비) 재해복구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모든 부처**가 공통적인 법체계 하 복구단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어, 농업분야만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및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 국고보조 등 지원) 제3항 국가·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안부)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 (국토부) 주택복구 / (농식품부) 농경지 복구, 시설복구, 대파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 가축 입식비 / (해수부) 어선 복구, 수산물 입식비 등

② 손해평가 시 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수용곤란

- 「보험업법」에서는 전문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만이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에서도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만이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손해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정확한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①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②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해평가사
- ③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른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손해평가인)

- 따라서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손해평가 업무에 참여할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손해평가 추진이 저해될 우려

③ 농작물재해보험 자동갱신제도 도입 : 수용곤란

- 밭작물 등 단년생 작물의 경우 매년 재배하는 작물이 변경될 수 있어, 자동갱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인수 부적정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1년 단위의 보험 운영이 필요함
- 다만, 한 농지에서 다년간 같은 작물을 재배하는 벼 및 다년생 과수 작물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전년도 가입내용에서 변경 사항 정도만 확인하는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음

- 아울러, 농가가 기간을 지나쳐 미가입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농협과 협력하여 판매 시기 전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④ 농작물재해보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및 보험료 할증 폐지 건의 : 수용곤란

- 현행 농업재해보험 국고보조율 50%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타 정책 보험과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비율로, 국고 지원비율의 확대는 여러 관계기관과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수용 곤란
-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사업 운영비 100%를 국가가 보조하여 일반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 보험료를 할인할증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손해율이 높은 농가만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역선택을 방지하는 등 보험제도를 건전하고 형평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폐지 및 억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⑤ 재난지원금(대파대, 농약대) 대폭 인상 현실화 : 수용곤란

- 재해복구비(재난지원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모든 부처**가 복구지원(피해복구 및 생계안정) 체계이며, 농업분야만 피해액(수익액의 80%)을 보상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발생 및 막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하여 신중한 검토 필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 국고보조 등 지원) 제3항 국가·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 (행안부) 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 (국토부) 주택복구 / (농식품부) 농경지 복구, 시설복구, 대파대, 농약대 등 농작물 복구, 가축 입식비 / (해수부) 어선 복구, 수산물 입식비 등

- 다만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약대·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단가를 지속 인상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인상 추진

* 인상신설 항목수 : ('17년) 인상 20, 신설 0 / ('18년) 25, 10 / ('19) 16, 5 / ('20) 123, 2 / ('22) 64, 23

II. 시·군 건의사항

1. 정당(정치인) 현수막 제도 개선	25
2.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건의	26
3.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적시 추진 지원 협조	27
4. 「고향사랑기부제」 정기 기부 도입 및 운영 개선 ..	29
5.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집행 통제목 신설	34
6.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교육” 이수 의무화 ...	36
7.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39
8.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40
9. 시장 격리곡 매입 품종 확대	41
10.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42
11.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지원	45
12.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통한 교육시설 유치	46
13.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47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①	정당(정치인) 현수막 제도 개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시·아산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당(정치인)의 정책홍보 현수막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관련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8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의2

□ **현황**

- (정당인) 신고 없이 정치현안 등에 대하여 15일간 장소물분 게시 가능(무료)
* 정당명, 정당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게시기간 표시
- (일반인)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지정게시대 7일간 게시 가능(유료)

□ **문제점**

- 정당인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로 도시미관 훼손, 시야방해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상가 간판을 가려 영업방해 등 다수의 민원 발생
* 기간을 명시하여 게시하더라도 게시기간 완료 시 철거하지 않고 다른 내용으로 게시기간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게시
- 게시장소, 기간 등 차별적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의 지속적 민원 제기
*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위배 항의

□ **건의사항**

-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의 게시 위치, 수량, 규격 등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작성기관

소 속 : 천안시(건축과)

성명: 전유경 ☎041)521-5686

소 속 : 아산시(공동주택과)

성명: 이종훈 ☎041)540-2758

- 건의사항(중앙부처·충청남도) -

②	장애아동 거주시설 설치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추진기간	2024년 ~	소요예산	순수운영비 1,300백만원(국비70 지방비30)		

◆ 장애아동의 심리·정서적 양육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남도 내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주거공간 및 체계적 돌봄 제공

□ 현황

- 장애아동 대다수가 거주시설에서 성인과 함께 생활하거나, 아동시설 내 비장애 아동과 함께 보육되고 있어 **맞춤형 돌봄 및 치료**가 필요함
- 보호 장애아동 비율 증가에 따른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한계
(단위:명)

구 분	비율	현원	장애아동	비고
계	5.96%	352	21	47
아동양육시설(3개소)	8.33%	132	11	경계성지능아동(47)
장애인거주시설(8개소)	4.54%	220	10	-

※ **경계성지능아동** :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낮은 아동으로, **지적장애 발달로 이어질 수 있음**

□ 문제점

- 현행법상 장애아동(6~18세)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 유형이 존재하지 않음
- 자치단체별 장애아동 규모가 작고, 중앙정부 **탈시설화** 정책으로 인하여 시설 설치·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건의사항

- 입법 보완을 통해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4] (장애인복지 시설의 종류)
- 충청남도 내 장애아동 거주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아동 맞춤 돌봄체계 구축

작성기관

소 속 : 천안시(장애인복지과)

성 명: 이지윤 ☎041)521-5393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③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적시 추진 지원 협조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천안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추진기간	2023년~2026년	소요예산	254억원(국비 58억, 도비 60억, 시비 136억)		

◆ 2026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추진을 위한 국제행사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 및 수립을 위한 협조 요청

◆ '24~' 26 K-컬처박람회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시 협조 요청

□ 사업개요

- (필요성) 초격차산업으로 성장한 한류의 뿌리부터 미래가치를 잇는 K-컬처의 종합적 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류문화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박람회 개최 필요
- (위 치)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일원
- (사업내용) K-컬처 5개 분야 및 K-SOUL을 담은 전시연출 프로그램 운영
〔K-POP, 게임, 뮤지컬, 드라마영화, 웹툰, K-Lifestyle(패션, 뷰티, 굿즈)〕
- (사업기간) 2023년~2026년
- (총사업비) 254억 원(2023년~2026년)

□ 추진계획

개최년도	행사명	콘텐츠 구성 방향
2023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천안시 주관
2024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천안시 주관
2025	2025 천안 K-컬처 박람회	충남도·천안시 공동 주관
2026	2026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충남도·천안시 공동 주관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2026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 국제행사 승인 신청 시 협조 요청

* 2023년 하반기 승인 신청 예정, 충청남도 ⇨ 기획재정부

○ 2024년~2026 K-컬처박람회 운영을 위한 국·도비 확보 협조 요청

- 2024년~2026 K-컬처박람회 예산 요구(예정) 내역

(단위 : 억 원)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2024년 요구(예정)			향후 투자
				요구	부처반영	정부안(A)	
계	254		28	36			190
국 비	58	-	3	10			45
도 비	60		5	10			45
시 비	136		20	16			100

작성기관

소 속 : 천안시(문화예술과)

성명: 송민관 ☎041)521-3408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④	「고향사랑기부제」 정기 기부 도입 및 운영 개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추진기간	2023. 4 ~ 12	소요예산	미산출(용역비) (국비)		

◆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기부】 도입을 제안(건의)함**

□ **현 황**

-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은 온라인·오프라인 / 일시 납부로 진행
 - 고향사랑e(lovegohyang.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부하거나 농협(NH)창구에서 기탁서 작성 후 기부하는 방식으로 전개

□ **문제점**

- 경기침체로 일시금 납부는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소액으로 정기적인 기부를 선택하는 기회가 부재한 상태로,
 - 現 고향사랑기부제의 기탁서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란이 누락되어 있고 시스템(운영체제)에서도 정기 기부 선택은 불가능한 상태
- 또한 고향사랑e에서는 지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메뉴가 없어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집하는 데 “출향인” 위주로 모집되는 한계 우려
 - 회원 확보가 어려울 경우 업무(기부금 모집·운영) 차질 불가피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서식개선) 정기기부 방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의 서식 개정 요구 (붙임 참조)
- (시스템개선) 정기 기부 항목 추가와 시스템 운영 방식 등 보완
 - (항목추가) 고향사랑e에 기부금액을 선택사항에 “기부기간”과 “기부방법” 추가 반영하여 기부자에게 폭 넓은 기회 보장과 부담 경감

기부금액 선택

기부가능한도 (원)
 개인 최대 기부 한도 금액: 연 5백만원

기부액 (원)

기부일자

기부방법 ☐ 일시 ☐ 정기

기부기간 ☐ 6개월 ☐ 1년 ☐ 3년

- (홍보방안) 고향사랑e에 배너를 삽입·수정하여 지자체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 권리자 권한을 확대하는 시스템 고도화 개발

답례품 고향사랑e을 통해 지자체 소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답례품 고향사랑e을 통해 지자체 소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현재 (개선 전)	앞으로 (개선 후)

- (접근성 강화) 모바일 웹(web) 방식이 아닌 모바일 앱(app)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 요청

작성기관

소 속 : 충남 공주시(미래전략실)

성명: 류광현 ☎041)840-2091

붙임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개정 전·후 자료[예시]

< 개정전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금액	금 원(₩)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례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수수료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160g/㎡)

< 개정후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기부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기부금액	금 원(₩)		
기부방법	☐ 일시 ☐ 정기	기부기간	☐ 6개월 ☐ 1년 ☐ 3년
기부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답례품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신청 []		
	이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함 []		
	답례품을 제공받지 않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 귀하

지방자치단체(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담당 공무원)가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위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 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기부업무의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 발급, 기부자서비스 등)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KG이니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자동결제신청 동의확인	기부금 결제 중단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기부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부자가 직접 작성하여 기부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한 금융기관이나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2.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답례품에 관한 정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별도의 답례품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160g/㎡)

※ 「기부방법」, 「기부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반영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 집행 통계목 신설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공주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추진기간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자체와 대학간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통계목 신설 건의

□ **현황**

- 최근 급격한 학령 인구감소와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 및 쏠림 현상으로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및 위기 직면(지역 위기로 확산)
- 지자체도 위기를 체감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 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연계 정책사업 추진

□ **문제점**

- 지자체의 지방대학 재정지원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정한 예산 통계목이 없어 혼선 발생
 -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시 지방보조금 한도액 부담 및 국립대학의 경우 민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 모호
 -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립대학 지원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편성 부적정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제2항 별표 11에 통계목 신설 건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2. 2.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의 경우 통계목 308-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와 같이 308-13(지방대학에 대한 보조)로 통계목 신설

작성기관

소 속 : 공주시(평생교육과)

성명: 박우선 ☎041)840-8371

참고1**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세출예산과목구분과 설정)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현행	개정안
308-01.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02. 징수교부금 03. 자치구 조정교부금 04. 시·군 조정교부금 05.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비 06. 시·군 기타 재원조정비 07. 자치단체 간 부담금 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09. 시·군·구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0.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2. 기타부담금	<좌 동> <통계목 신설> 308-13 지방대학에 대한 보조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

참고2**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⑥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서산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추진기간	연중	소요예산	비예산	(국비, 지방비)	

- ◆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이수 의무화
- 장기요양기관 등 대상 감염예방·관리 의무교육 법적 근거 마련

□ 현황

-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사망자 중 고령인구의 분포율이 95%에 육박

[참고1]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1월 1주 (12.30~1.5)	1월 2주 (1.6~1.12)	1월 3주 (1.13~1.19)	1월 4주 (1.20~1.26)	1월 5주 (1.27~2.2)
감염취약시설 (전국기준)	검사자(건)	216,804	212,516	209,136	195,704	204,603
	양성자(명)	2,709	2,241	1,564	1,027	895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양로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참고2] 연령대별 사망자수 및 치명률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사망누계	분포율	치명률	비 고
연 령	소 계	33,574	100	0.11	질병관리청 통계자료 (‘23. 2. 8.)
	80세 이상	20,037	59.7	1.96	
	70세-79세	7,611	22.6	0.45	
	60세-69세	3,807	11.3	0.12	
	50세-59세	1,370	4.1	0.03	
	40-49세	455	1.4	0.01	
	30대 이하	294	0.9	0.01	

- ☞ 동절기(7차) 재유행 정점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나 고령인구의 치명률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으로 **감염취약시설 대상 지속적·항구적인 감염관리가 절실**

□ 문제점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의 감염관리 교육 미 이수에 따른 집단감염 대응 및 환자 관리 역량 미흡 문제 도출
 -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실 의무설치 시설(100병상 이상의 병원 등) 외 **소규모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은 법정 감염관리 교육 이수 의무가 없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관리자 대상 정기적인 감염예방·관리 교육 이수 의무 부여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
- 대상 시설 중 고령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 부터 시범 적용

□ 개정안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현 행	개선안
없음	④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염병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의 2(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대상 시설)

현 행	개선안
없음	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병상 이하의 요양병원 을 말한다.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의 3(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현 행	개 선 안
없음	①법 제49조의2제4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관리 업무의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2. 시설 소독·환기 등 감염병 예방·관리 지침 3. 동일집단(코호트)격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원칙 4. 노출자별 동선 분리 및 증상별 관리 요령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감염병 예방·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또는 간호사회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감염관리 관련 전문 학회 또는 단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의 실시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작성기관

소 속 : 서산시(감염병관리과)

성명: 조성훈 ☎041)661-8238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⑦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논산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스마트농업과)
추진기간	2023. 1월~	소요예산	약 150억원(지방비)		

◆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면세유 구입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현황

○ 논산시 면세유 상승 가격 (출처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구분	휘발유(원/L)	경유(원/L)	등유(원/L)
인상 전(2021년평균)	768.79	803.75	773.45
인상 후(2023년01월)	1015.20	1340.32	1286.46
상 승 가 격	246.41	536.57	513.01

※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 : 휘발유 32.0% 상승, 경유 66.7% 상승, 등유 66.3% 상승

□ 문제점

-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
- 농가 경영비 증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

□ 건의사항

- 지원내용 : 면세유 구입비 중 **가격상승분에 대하여 일부(50%) 지원**
- 소요예산 사업비(논산)

구 분	예상판매량(L)	상승가격(원/L)	소요예산 사업비(천원) (예상판매량×상승가격×50%)	비 고
3종	11,448,584		2,938,515	22년~6월 판매실적 기준
휘발유	302,706	246.41	37,295	
경 유	3,586,271	536.57	962,143	
등 유	7,559,607	513.01	1,939,077	

※ 소요 예산의 과다로 인한 농가당 신청량(유종 구분 없이 10,000ℓ/농가당) 한도 및 지원 개월 수를 3개월 또는 4개월로 제한 할 경우 **시군당 약 10억원 내외 소요**

※ 사례) 전라남·북도 도비지원: 2022년 1~6월 중 4개월분 상승분의 50% 지원

작성기관

소 속 : 논산시(농촌활력과)

성명: 정기영 ☎041)746-654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⑧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인상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계룡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추진기간	2023. ~ 계속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 및 각종 시정 업무 수행하는 이·통장의 활동보상금 기준액을 보완하여 이·통장 사기 진작과 복지서비스 증진

□ 이·통장 활동보상금 기준액 현황

- 기본수당 : 월 300,000원 이내
- 상 여 금 : 연 600,000원 이내(연 200%)
- 회의 참석수당 : 1회 20,000원(월 2회)

□ 문제점

- 이·통장 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 간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후 2020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 각종 민원 해결, 신규 행정 시책 및 수요 증가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물가상승률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임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물가상승률 반영 및 이·통장 처우 개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통장 상여금 및 회의 참석수당 등 활동보상금 인상 건의 (행안부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선)

작성기관

소 속 : 계룡시(자치행정과)

성명: 임충환 ☎042)840-2102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⑨	시장 격리곡 매입 품종 확대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당진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추진기간	2023~	소요예산	(국비, 지방비)		

◆ 시장 격리곡 매입계획 대비 수매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매입품종 추가 확대를 통해 격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 매입현황

○ 매입 현황

(2023. 2. 6.기준)

구 분	계 획(톤)	실 적(톤)	비율(%)	비 고
계	20,936	16,614	79.3	
공공비축	9,120	9,120	100	포대벼(5,990), 산물벼(3,130)
시장격리	11,816	7,494	63.4	21년산(1,731), 22년산(5,763)

□ 문제점

- 매입계획 대비 시장 격리곡 수매 참여율 63.4%로 저조
- 기존 매입품종에 황금노들 품종 추가하였음에도 계획물량 미충족
- 시장격리곡 품종 요건(생산단수 570kg/10a 미만) 충족하는 벼
보유농가 부존재

□ 건의사항

- 격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격리곡 품종 추가 확대
(3품종→5품종)

작성기관

소 속 : 당진시(농업정책과)

성명: 조소연 ☎041)350-413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⑩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제한 개선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여군)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추진기간	2023. . .	소요예산	- (국비, 지방비)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자치단체 교육경비 제한 규정 폐지·완화로 교육여건을 개선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농간 교육경비 지원 불균형으로 인구 유출 심각성을 우려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소속직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는 관할 고교이하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음
- 2022년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 57개 시·군·구(시-5, 군-47, 구-5) ※ 충남 2개군(부여, 청양)

□ 문제점

- 지자체간 교육경비 지원의 불균형으로 교육격차 심화
-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 현상 심화
- 관련 규정 개선 건의를 전국 지자체에서 8차례(참고 2)하였으나, 별다른 개선안 마련 없음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 삭제, 자치단체 자율 지원 여부 결정

작성기관

소 속 : 부여군(자치행정과)

성명: 김완규 ☎041)830-6854

참고 1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구 분	2022년도	2021년도
계	57개	63개
시	5개 시	4개 시
	강원(1) : 태백 전북(3) : 정읍, 남원, 김제 경북(1) : 상주	강원(1) : 삼척 전북(2) : 정읍, 남원 경북(1) : 상주
군	47개 군	51개 군
	인천(1) : 옹진 강원(6) :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충북(4) : 보은, 영동, 괴산, 단양 충남(2) : 부여, 청양 전북(7)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전남(11) :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경북(10)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릉 경남(6) : 의령,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인천(1) : 옹진 강원(6) : 횡성,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충북(5) :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충남(3) : 부여, 서천, 청양 전북(7)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전남(13) :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경북(10)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예천, 봉화, 울릉 경남(6) : 의령,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합천
자치구	5개 자치구	8개 자치구
	부산(2) : 서구, 영도구 대구(1) : 남구 인천(1) : 동구 대전(1) : 동구	부산(3) :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2) : 서구, 남구 인천(1) : 동구 대전(2) : 동구, 중구

참고 2

교육경비 보조 사업 제한 개선 요구

건의일	건의기관	건의사항	개정내용
13.10.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완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호의 「일반회계세입」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으로 개정(또는 삭제) ○법령에 따라 사업 불가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교부	
13.12.	경남지역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다만,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0.5%범위 이내의 경우 예외
14.03.	전남지역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 삭제, 자치단체 자율 지원여부 결정 ○교육경비 합법적 보조지원 개정	
15.01.	인천군수구청장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 삭제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세입과목 개편으로 교육경비 사업중단 초래에 따른 제도 개선
15.05.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교육부) ○가칭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교육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장(농어촌 교육 여건의 개선)에 맞는 대책 마련(농림, 해양수산부)	
15.09.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제한 규정 폐지 ○자치단체별로 예산의 일정 비율 내에서 상한선 설정을 통해 교육 지원	
18.08.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지방세와 세외 수입 및 일반조정교부금 총액
18.12.	경남협의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제3조 제3호 삭제	

- 건의사항(충청남도) -

⑪	자율방범대 단체상해보험 지원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 (자치경찰행정과)
추진기간	2023. 4. ~	소요예산	40,000천원 (도비 50%, 군비 50%) ※ 홍성군 지원 기준(100천원 * 400명)		

◆ 치안유지, 주민구호,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법 활동 및 교육·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방법대원 보호

□ 현황 및 필요성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3. 4. 27.)

<자율방범대법('22. 4. 26. 제정, '23. 4. 27. 시행)>

제14조(경비 등의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자율 방범 활동 및 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 보호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선제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결정, 시군 간 형평성 문제(시군 대원 간 복지 격차) 사전 예방
 - 2023. : 단체 상해 공제 가입 대상자 선정 및 예산 확보
 - 2024. : 단체 상해 공제 등록신청서 제출 및 회비 납부

□ 건의사항

- 법 제정 및 시행으로 70여 년 만에 법적 근거를 갖춘 조직이 된 방법대의 활동을 장려하고 치안 보조단체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도비 지원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행정지원과)

성명 : 김광덕 ☎041)630-1814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⑫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통한 교육시설 유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군)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추진기간	2023. 4. ~	소요예산	비예산		

◆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으로 충남혁신도시 내 교육시설 설립 근거 마련을 통해 자족형 성장 거점도시 완성**

□ **필요성 및 추진상황**

-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여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기업·대학·연구기관의 유기적인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발전 견인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연계하여 지역인재 확보·유출 방지 : 30%

- ‘충남대·충남도·홍성군’ 캠퍼스(내포) 설립 합의각서 체결('19. 12.)
- 교육부 방문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건의('20. 9.)
- 내포캠퍼스 설립 민관학 협력 혁신전략 대 토론회 개최('21. 5.)
- 내포캠퍼스 설립 부지 매입을 위한 실무협의 및 간담회 등('21. 6. ~)

□ **건의사항**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1(학교의 명칭·소재지 및 과정) 비교’ 개정
- 대학 교육시설의 일부를 충청남도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비고] 다음 각 호의 학교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해당 호에 따른 지역에 둘 수 있다.

(현재) 2. 공주대학교 ~ 충남대학교 ~ 한밭대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신설) 6.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 : 충청남도

작성기관

소 속 : 홍성군(혁신전략담당관)

성명 : 박원배 ☎041)630-1191

- 건의사항(중앙부처) -

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 개선 건의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태안군)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추진기간	2023. 1. 1. ~	소요예산	-		

◆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 기부자 편의 제공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건의**□ **현황**

- 대상·한도 : 개인 / 연간 500만원 이내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시스템 (오프라인) NH농협은행
- 답례품 :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특산품, 상품권 등 지급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16.5%)

□ **문제점 및 건의사항**

- 고품충 등 오프라인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신청방법 개선
 - 오프라인 기부시, 포인트가 1~3일 후 고향사랑e음시스템에 적립
 - 답례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은행에 재방문해야 함에 따라 오프라인 기부신청 방식이 온라인의 단점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오프라인 기부시, 기부신청과 답례품 선택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건의
- 고향사랑기부 전담인력 충원 근거 마련
 - 제도 추진을 위한 업무량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반영 등 조치

작성기관

소 속 : 태안군(행정지원과)

성 명: 이미희 ☎041)670-2287

건의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주요건의 ①	교육청-지자체 간 교육경비 주체 명확화				
건의기관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아산시)	건의일자	2023. 2. 23.	협조부처 (부서명)	충청남도교육청
추진기간	2023. 1. ~	소요예산	비예산		

- ◆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은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지자체는 교육의 보조적·특성화 사업 발굴을 통해 재정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재정투자 효과성 도모

□ 현황

- 자치단체 지원 교육경비에 대해 실질적 성과평가 및 추진결과 환류 없이 전년도 기준 사업의 유지 편성, 교육지원청의 수요조사를 통한 관행적 예산 편성
- 충남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기금 등 적립금(1조 785억)은 내국세 정률(20.79%)로 편성되어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 꾸준히 확대되나, 저출생에 따른 초중고 학령인구 감소로 적립되고 있음.

〈 충청남도교육청 연도별 기금조성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당초	69,087	79,593	139,536	287,437	1,105,192
	최종	69,817	144,460	283,656	1,078,58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당초	0	0	64,609	208,592	1,029,769
	최종	0	64,160	206,968	998,714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교육성지원기금	당초	69,087	79,593	74,927	78,845	75,423
	최종	69,817	80,300	76,687	79,867	

※ 출처: 2023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

□ 문제점

- 지자체는 복지부담 등 고정지출 증가와 주민편익시설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대규모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고, 더욱이,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정 여력은 계속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규 교육분야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음.
- 반면, 충남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예산은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당 하고도 남은 상황임에도 교육 본질적인 성격의 사업을 지자체예산 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지속적 증가

□ 아산시 개선사례

- 2023.1. 교육청소년 분야 브레인스토밍 실시 및 교육경비 예산 재검토
 -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및 추진 주체 조정
(교육청) 교육본질적 성격의 사업, (아산시) 보조적, 특성화 사업
 -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기관 상수도 요금 감면 등 5개 사업 지원 중단(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및 추진요청), 1개 사업 일부 조정

구분	사업명	사업주체	조정금액	사업비 (천원)		자부담 (교육청)	비고
				변경전	변경후		
교육청 연계사업	합계		913,154 (도 16,000, 시 897,154)	1,393,154 (도 16,000 시 1,377,154)	480,000		
	농산촌시내권 및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 지원청	20,000	500,000	480,000	418,280	일부사업 조정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감면	시	350,000	350,000	0	-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 및 추진
	통학환경 개선 지원(중학교)	해당 학교	51,154	51,154	0	119,363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교육 지원청	20,000 (도 6,000, 시 14,000)	20,000 (도 6,000, 시 14,000)	0	43,000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육 지원청	200,000	200,000	0	87,000	
	학교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교육 지원청	272,000 (도 10,000, 시 262,000)	272,000 (도 10,000, 시 262,000)	0	490,000	제2기충남 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해지

□ 건의사항(또는 개선사항)

○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및 추진 주체 명확화

- (교육청) 교육 본질적 성격의 사업
- (지자체) 보조적, 특성화 사업
- 재정부담 주체에서 운영 주체로의 역할기능 전환 필요

□ 기대효과

○ 시·군 교육경비 매칭 부담 최소화

○ 교육사업 성격 및 역할에 따른 재정부담 및 추진 주체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육사업 운영 가능

○ 조정을 통해 마련된 교육지원 예산은 창의적 아이디어 및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학교 지원 등 실질적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작성기관

소 속 : 아산시(교육청소년과)

성명: 정은정 ☎041)530-6262

Ⅲ. 협의회 논의 및 심의

1.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 촉구 결의 53
2. 차기회의 개최지 선정 55

논의사항

①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전개 촉구 결의

【논산시】

- ◆ 정부의 ‘5도2촌’ 정책에서 ‘5촌2도’ 로의 정주 패러다임 전환
선도로 농촌을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추진 배경

- 전국 229개 도시 중 89개 도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소멸 위기 직면
 - ※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9개 시군 인구감소지역 지정
- 인구감소지역이 부흥의 도시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구체화 필요
-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해결 방안 절실

□ 추진 내용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5촌2도’ 캠페인 확산
 - * 5촌2도 캠페인 선포식(2022. 2. 23.)을 시작으로 전국 전파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캠페인 참여 협조
 - 범정부적 차원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 구체화 촉구
- 지방 혁신 성장 촉진을 위한 시·군 협력 결의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5촌2도’ 정주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인식
 - 범 충남 차원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응
 - 지역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결의

□ 기대 효과

- ‘5촌2도’ 활성화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 국민의 인식 전환
- 정주 인구 증가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회 확보

-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 5촌2도 캠페인 전개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1주일에 5일은 도시에서 일하고 2일은 농어촌에서 여가를 즐기는 5도2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국 229개 도시 중 89개 도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고, 충남의 9개 지역 또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5도2촌은 절박한 농어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은 아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더 크고 더 강한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의 핵심 비전이 담긴 전략적 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5도2촌’에서 ‘5촌2도’로의 정주 패러다임 전환으로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고자 한다.

이에 220만 충청남도민과 15개 시군의 시장·군수 모두는 「5촌2도 캠페인」을 선도적으로 선포하고, 경제, 농업, 관광, 주거, 교육, 복지분야의 정책 대전환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5촌2도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5도2촌’에서 ‘5촌2도’로의 정주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를 통해 농어촌을 소멸의 도시에서 부흥의 도시로 탈바꿈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3. 2. 23.

충청남도 시장·군수 일동

논의사항

② 차기 회의 개최지 선정

◆ 민선8기 1차년도 제4차 충남협의회 회의 개최지 사전 논의

□ 회의 개요

- 근거 : 『협의회 회칙』 제10조 (회의)
- 참석대상 : 충남 시장·군수 15인
- 회의개최 : 격월(연 6회)
- 주요내용 : 협의회 활동사항, 시군 건의사항, 논의안건 등 보고

□ 개최 방안

- 개최시기 : 2023. 4월 중(협의)
- 개최장소 : 협의

□ 민선 7기 및 8기 1차년도 1차회의 충남협의회 회의 개최현황

구 분	일 자	장 소	비 고
민선 7기 1차년도	2018.12.20.(목)	논산시청 상황실, 선샤인랜드	
	2019.01.17.(목)	충남도청 대회의실	
	2019.03.13.(수)	천안시청 중회의실	
	2019.05.27.(월)	당진시청 해나루홀	
민선 7기 2차년도	2019.07.25.(목)	충남도청 대회의실	
	2019.09.30.(월)	논산 돈암서원	
	2019.12.26.(목)	충남도청 문예회관	
	2020.02.03.(월)	道 현장대책본부 상황실(아산)	
	2020.03.18.(수)	충남도청 대회의실	
민선 7기 3차년도	2020.05.19.(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2020.07.13.(월)	서산 베니키아 호텔	
	2020.12.16.(수)	영상회의	
	2021.01.28.(목)	영상회의	
	2021.03.29.(월)	영상회의	
민선 7기 4차년도	2021.05.27.(월)	논산시청 회의실	
	2021.09.07.(화)	공주 아트센터 고마	
	2021.12.21.(화)	금산군청 다목적 회의실	
	2022.03.28.(월)	충남도청 대회의실	
	2022.06.09.(목)	홍성군청 회의실	
민선 8기 1차년도	2022.09.16.(금)	천안시청 대회의실	
	2022.11.17.(목)	청양군청 대회의실	

IV. 홍보·협조사항

1.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59
2. 2023년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61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62
4. 고향사랑기부제 충남도민 기부 독려	64
5.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65
6. 2023 논산딸기 축제	66
7.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68
8.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69
9. 지역상생 시·군 기부 챌린지 추진	70
10. 남당항 명품 새조개 판매	71
11. 제19회 예산 윤봉길 전국 마라톤 대회	72

협조·홍보사항

1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천안시】

◆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최초 개최에 따른 충남 각 시·군별 홍보 협조 및 시·군민 방문 참여 독려

□ 개요

- 명 칭 :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라이브]
- 기 간 : 2023. 8. 11.(금) ~ 8. 15.(화)
- 장 소 : 천안 독립기념관(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일원
- 주 최 : 천안시
- 주 관 : 천안시,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
- 사 업 비 : 28억 원
- 주 제 :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 에서 글로벌 ‘한류 문화’ 를 노래하다
- 행사내용 : 국내 최대규모 한국문화엑스포(K-CULTURE EXPO)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각 시·군 이·통장 단체 등 회의 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관람 안내 등 홍보 협조
- 각 시·군 및 읍·면·동 민원실 등 K-컬처 박람회 포스터* 및 홍보
영상 게재 협조

* 홍보 포스터, ‘Kulturism’ 서포터즈 모집공고문 등

- 각 주요 지점 홍보영상, 전광판 및 현수막 게재 등 홍보 협조

박람회 포스터 및 홍보영상 등 별도 송부 예정

붙임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홍보 포스터



The poster features a large, stylized 'K' in the center, composed of various images including a statue, a modern building, and a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ance. The background is dark blue with white stars. The text is in both Korean and English.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 LIVE
CHEONAN K-CULTURE FAIR 2023

Wonderful K-Spirit. **K** Sing Together ▶ LIVE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CHEONAN K-CULTURE EXPO 2023
8.11(금)~15(화) 5일간 독립기념관 일원

천안시 독립기념관 천안문화재단

협조·홍보사항

2 2023년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보령시】

◆ 보령9味중 하나이며 봄 제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를 이용한 수산물 축제로 신비의 바닷길로 유명한 무창포에서 개최

□ 개요·현황

- 기 간 : 2023. 3월 중순 ~ 4월 중순
- 장 소 : 보령시 웅천읍 무창포항 일원
- 주 관 : 무창포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체험
 - (공연·행사) 개막·축하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무창포가요제
 - (체험) 맨손 고기·주꾸미 잡기 체험, 바지락 잡기 체험
 - (기타) 수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싱싱한 제철 수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체험도 즐기며, 신비의 바닷길까지 경험할 수 있는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협조



맨손 고기·주꾸미 잡기 체험



주꾸미를 활용한 제철 음식

협조·홍보사항

3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참여

【아산시】

- ◆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78주년을 맞이하여 이순신 장군의 얼을 기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하여 이순신 장군의 위업과 충효애 정신을 선양하고자 함**

□ 축제개요

- 사업명 : 아트밸리 아산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 테마 : ‘청년 이순신, 세상을 품다’
- 기간 : 2023. 4. 28.(금) ~ 4. 30.(일) / 3일 간
- 장소 :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곡교천, 온양역광장 등
- 주최/주관 : 아산시 / (재)아산문화재단

□ 주요내용

사전행사	이순신종합운동장	현충사	곡교천/역광장
친수식/ 이순신 학술세미나	·개막식, 폐막식 ·깃발 게양식 ·군악의장 본공연 ·국립국악원 예술공연	·군악의장 프린지공연 ·전국 축시 낭송 대회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 ·전국 궁도 대회	·군악의장 프린지 공연 ·릴레이 버스킹 공연 ·승마체험 ·전통 의복체험 ·열기구 계류체험
	·곡교천/현충사/백의종군로 : 백의종군 걷기대회·마라톤대회		

협조사항

- ◆ 축제의 주제를 이순신 장군 관련 내용으로 혁신적 개편
- ◆ 2023. 4. 28.(금) 개막식에 시장·군수님께서 참석하시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살리는 국내 최대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협조 드림
- * 개막식 세부 일정 추후 상세 안내

참고

축제일정(안)

일자 시간	1일차 - 4월 28일(금)			2일차 - 4월 29일(토)			3일차 - 4월 30일(일)							
	종합 운동장	현충사	역광장 일원	종합 운동장	현충사 은행나무길 역광장	백의종군길/ 곡교천	종합 운동장	현충사	역광장/ 곡교천					
09:00~14:00		전국궁도 대회 (08:00~ 16:00) / 축시 낭송대회 (13:30~ 14:30)	출정 행렬 · 거리 파レード (전·軍 군악 의장대)	상설 체험 프로그램	전국 난중일기 사생대회 (10:00~ 14:30) (현충사) · 역광장 터레이 버스킹	백의종군 걷기대회 (08:00~ 15:00) · 승마체 험 군복체 험 (곡교천)	상설 체험 프로그램	백의종군 마라톤 대회 (09:00~ 14:30) / 전국 난중일기 백일장 (10:00~ 14:30)						
14:00~15:00				군악의장 주공연 (1부)						군악의장 프린지 공연	군악의장 프린지 공연 (곡교천)	군악의장 주공연 (1부)	군악의장 프린지 공연	군악의장 프린지 공연
15:00~16:00														
16:00~17:00														
18:00~19:00	예술 공연 (난중일기 칸타타)		역광장 터레이 버스킹	예술 공연 (세계 태권도 연맹시범 공연단 쇼코이어 공연)	역광장 터레이 버스킹	승마체 험 군복체 험 (곡교천) · 이순신 열기구 체 험 (16:00~ 19:00) (곡교천)	예술 공연 (국립 국악원 이순신 찬가 일무)	역광장 터레이 버스킹						
19:00~20:00	깃발 제양식 · 군악 의장대 입장식 · 개막식 · 개선행진 곡(연주) · 명랑독창 · 428합창 · 군악의장 공연 · 군악기수 공연			군악의장 주공연 (2부)					폐막식 · 군악의장 합동공연 · 개선행진 곡(연주) · 한산섬 달밝은 밤에독창 · 428합창 · 불꽃쇼					
20:00~21:00														
21:00~														
사전행사	친수식		- 신정호(친수식) : 4월 28일 탄신기념주간 중 추진 - 광화문(친수식): 4월 28일 탄신기념주간 중 추진											
	이순신학술세미나		- 온양제일호텔 : 4월 28일 탄신기념주간 중 추진											

협조·홍보사항

4 고향사랑기부제 충남도민 기부 독려

【서산시】

- ◆ 2023. 1. 1일자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은 충남도 내 시·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재원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제도목적 :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내용
 - 기 부 자 : 개인(법인 불가, 현 주소지 외 전국 기초·광역 자치단체 가능)
 - 상 한 액 : 1인 연500만원
 - 기부혜택
 - ┌ 세액공제 : 연 10만원까지 전액, 초과 시 초과분 16.5%
 - └ 답 레 품 : 기부액의 30%이내 지역 특산품 등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http://www.ilovegohyang.go.kr>) 및 전국 농협 창구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충남도민은 충남도 내 시·군에 기부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이 충남외 자치단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 서산시는 타시군 교차 방문 및 관내 관공서·기업체 방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설명하고 충남도내 시·군에 기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2023. 3. 2.(목) 당진시청 방문예정

<서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단위 : 천원)

품목	서산6쪽마늘	감태세트	생강한과	어리굴젓
가격	15/45	15/30/100	13/25	20/38
품목	한우세트	뜸부기쌀	양념세트	서산의맛(꾸러미)
가격	50/100/300	13/29	30/33/50	30

※ 계절별, 제품별 출하 가능 시기에 따라 답례품 현황은 달라질 수 있음.

협조·홍보사항

5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

【 서산시 】

- ◆ 농지법(1973.1.1.) 시행이전 주택 등으로 형질변경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변경을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한 사례 홍보

□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되어 “대”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업대상 : 전, 답, 과수원 중 1973. 01. 01. 이전 형질변경(주택 등) 완료된 토지 ※(전, 답, 과수원 ⇒ 대)
- 사업효과
 - 소유권이전, 증여 등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 가능
 - 이용현황과 일치하는 공부작성으로 정확한 지적관련 정보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그동안의 추진현황

- 2021년 ~ 2022년 정리실적 : “211필” 정리 완료
- 2021년 충청남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최우수기관 선정

□ 협조 또는 홍보사항

-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사업 추진을 통해 시·군민이 소유권이전 등에 불편을 겪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 협조

협조·홍보사항

6 2023 논산딸기 축제

【논산시】

- ◆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된 논산딸기축제는 국방친화적인 논산의 특화 콘텐츠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딸기엑스포 유치로 통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의 도약 기대

□ 행사개요

- 주 제 : **-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 -**
- 기 간 : 2023. 3. 8.(수) ~ 3. 12.(일) / 5일간
- 장 소 : 논산시민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
- 주 최 : 논산시
- 주 관 : 논산문화관광재단
- 후 원 : 충청남도 · 육군항공학교 · 논산관내농협
- 주요행사 : 청정딸기 수확 체험 / 딸기 디저트 카페 /
상설키즈존(키자니아 고!) / 메타버스 현장 이벤트 /
헬기타고 탐정호 여행/ 헬기전시 등 90여종
- 행사구성

5개 구역				
설향마당	킹스베리마당	하이베리마당	비타베리마당	행복마당
·홍보관 ·홍보부스 ·종합안내소	·딸기판매장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키즈존 ·딸기공예체험 ·체험부스	·딸기 디저트카페 ·딸기 퓨전레스토랑	·딸기수확체험 ·향토음식점 ·헬기전시탑승

□ 협조사항

- 많은 도민이 딸기의 맛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참여 홍보 협조

붙임

홍보 포스터

2023 NONSAN STRAWBERRY FESTIVAL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2023

논산딸기축제

- 세계 딸기 엑스포를 향한 달콤한 유혹 -

🍓 2023. 3.8.(수) ~ 3.12.(일) 🍓

논산시민공원 및 시민운동장

• 청정딸기 수확체험 • • 딸기 디저트 카페 • • 헬기타고 탐정호 여행 •

주최 | 논산시 주관 | 논산문화관광재단·논산딸기축제 운영위원회 후원 | 충청남도·육군항공학교·논산관내농협

협조·홍보사항

7 2023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우리금산은, 금수강산의 본고장이요, 생명의 고향입니다." 【금산군】

◆ 금산에서 **하나되GO!** 도민모두 **함께하GO!** 라는 구호아래 18년만에 금산에서 충남체전을 개최함에 있어 시장·군수님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행사 개요

- 기 간 : 2023. 09. 14.(목) ~ 09. 17.(일) / 4일간
- 장 소 : 금산종합운동장 등 32개소
- 주 최 : 충청남도 체육회
- 주 관 : 금산군체육회, 도 회원종목단체
- 후 원 :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교육청
- 경기종목 : 30개 종목(채점 19 / 비채점 10 / 시범종목 1)

구 분	종 목 별	개 최 종 목
채점 19종목 (종합시상)	단체종목 (5)	게이트볼, 배구, 야구, 족구, 축구
	개인단체 (5)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검도, 볼링
	체급종목 (5)	복싱, 유도, 씨름, 태권도, 보디빌딩
	기록종목 (4)	궁도, 역도, 육상, 수영
비채점 10종목	생활체육종목 (10)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승마, 산악(등산), 자전거, 체조,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시범 1종목	개인단체(1)	골프 ※ 2022년 신설

※ 환영만찬 및 개회식 : 9.14.(목) 17:00~ / 금산종합운동장

□ 상징물 및 구호

엠블럼	마스코트	포스터	구 호
			금산에서 하나되GO! 도민모두 함께하GO!
■ 금산의 대표 상징인 인삼을 의인화하여 결승점을 향해 힘차게 뛰는 모습을 형상화	■ 충남도의 캐릭터 '충청이'와 '충나미'가 성화를 들고있는 금산의 캐릭터인 '삼둥이'의 양옆에서 소개하는 모습	■ 인삼팔, 잎, 뿌리를 활용하여 사람의 형태를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엠블럼, 마스코트, 구호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 군민대상 공모 선정작 <대상>

협조·홍보사항

8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 서천군 】

◆ 천연기념물 제169호 동백꽃 개화 시기 및 주꾸미 제철을 맞이하여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 개최

□ 개요 · 현황

- 기 간 : 2023. 3. 18.(토) ~ 4. 2.(일), 16일간
- 장 소 : 서천군 마량진항 일원
- 주최/주관 : 서면개발위원회
- 주요내용 : 주꾸미 낚시 체험, 주꾸미 요리장터, 특산품 판매 등

□ 홍보사항

- 제21회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를 개최 예정인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협조



협조·홍보사항

9 지역상생 시·군 기부 챌린지 추진

【청양군】

- ◆ 전국 자치단체별 고향사랑 상호기부 사례 증가
- ◆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으로 지역상생 및 지역 균형발전 제고

□ 현 황

○ 지역간 협력을 통한 기부문화 분위기 확산

- 서울↔제주도, 낙동강협의체 동맹도시 상생협력*, 완주군↔칠곡군
광주 동구↔전남 무안

* 양산시, 김해시, 부산 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기부 분위기 조성 필요

□ 협조사항

○ 충남 15개 시·군 고향사랑 기부 챌린지 건의



(순서)

- 청양군→○○시·군→△△시·군 등
기부하고 지정

(기부금액) 상호 협의

(기대효과)

- 지역간의 경쟁이 아닌 협력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

○ 충청남도과 타 지역 광역단위 상호협약 건의

- 건의내용 : 우리 도와 친선(우호) 광역자치단체별 협약추진
- 대 상 : 충청남도 ↔ ○○시·도
- 내 용 : 충청남도(15 시·군·구 포함)와 협약 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구축(홍보 등)

(예시) 품앗이 홍보를 통한 전광판 무료 송출

협조·홍보사항

10 남당항 명품 새조개 판매

【 홍성군 】

◆ 육질이 쫄깃하고 단맛이 뛰어난 겨울철 별미인 새조개를 널리 알려
상품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개요

- 기 간 : 2023. 1. 14.(토) ~ 2023. 3. 31.(금)
- 장 소 :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서부면 남당항로213번길 1-1)
- 주 관 : 홍성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
- 후 원 :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홍성군
- 내 용 : 새조개 까기 및 시식, 기타 체험활동 등

□ 협조 또는 홍보 사항

- 홍성 남당항 명품 새조개의 맛을 도민들이 맛보며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협조



천수만 새조개



대표 음식(새조개 샤브샤브)

※ 새조개 효능 : 단백질, 철분, 아연, 타우린이 풍부하고 맛과 향이 뛰어나며,
지방 함량이 낮아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에 권할 영양식품

협조·홍보사항

11 제19회 예산윤봉길 전국 마라톤대회

【 예산군 】

- ◆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의 기량 발휘 및 교류의 장 마련
- ◆ 대회 참가자의 지역 관광 명소 방문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대회개요

- 대회일시 : 2023. 4. 9.(일) 09:00
- 대회장소 : 예산군 종합운동장 일원
- 신청기간 : 2023. 2. 13. ~ 3. 24.(선착순 마감)
- 종 목 : 하프(20km), 10km, 5km
 - 하프 구간 : 예산군 종합운동장 ⇨ 벚꽃로 ⇨ (구) 신례원검문소(반환점)
 - 10km 구간 : 예산군 종합운동장 ⇨ 벚꽃길 요양원(반환점)
 - 5km 구간 : 예산군 종합운동장 ⇨ 아리랑 삼거리(반환점)
- 참가비 : 하프(20km), 10km -> 30천원, 5km -> 15천원
 - ※ 참가비 환불 신청 및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요청은 접수 마감일(~ 3. 24.)까지 가능
- 주최/주관 : 예산군체육회, 중도일보
- 참가인원 : 3,500명

□ 협조사항

- 2019년 이후 4년만에 개최하는 대회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회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 2. 13.부터 홈페이지 오픈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 인터넷 검색창에 '윤봉길 마라톤' 검색 또는 홈페이지
(www.yesanmarathon.co.kr) 주소 입력 (문의 ☎ 041)331-3630)

참 고 자 료

1. 202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75
2. 민선8기 1차년도 세입세출현황 보고 77
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78

2023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시 기 : 23년 3월중
- 사 업 비 : 6,600천원(구축비 6,000천원, 운영비 년 600천원)
- 주요내용 :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 추진계획 : 협의회 소개 및 시군별 관광, 축제 소식 등 홍보

2 시장·군수협의회 홍보 영상 제작

- 시 기 : 23년 5월중
- 사 업 비 : 10,000천원
- 주요내용 : 시장·군수님의 숏영상 제작 유튜브 송출(3분 분량)

3 시·군 정책대회 추진

- 시 기 : 23년 6월중~7월중
- 사 업 비 : 45,000천원
- 주요내용 :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시·군의 우수한 정책을 언론사를 통한 홍보

4 시·군 정책박람회 개최

- 시 기 : 23년 9월중
- 사 업 비 : 20,000천원
- 주요내용 : 민선8기 1년의 우수정책 추진상황 홍보 및 점검
- 추진계획 : 시·군별 부스마련 우수 정책 전시 및 홍보(9월중 2~3일간)

5

우수정책 자료집 발간

- 시 기 : 23년 12월중
- 사 업 비 : 20,000천원
- 주요내용 : 23년 추진한 시·군별 자랑할만한 정책 또는 최고의 이슈 소개
- 추진계획 : 시·군별 자료 수집 및 발간

6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

- 시 기 : 23년중
- 사 업 비 : 45,000천원(구축비 35,000천원, 유지보수 년 10,000천원)
- 주요내용 : 비전자문서시스템(수기)을 전자문서유통시스템으로 전환
- 추진계획 : 충청남도 시·군 및 전국협의회와의 문서전달체계 전환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투명성 제고

세입세출 현황 보고

□ 세입세출현황 [2023.2.10. 기준]

○ 세입예산 현재표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계	4차년도 이월	예금이자	자치단체부담금
계	246,926,516	96,879,123	47,393	150,000,000

○ 세출예산 현재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수입액(세입) ①	지출액 ②	잔액 (①-②)	비 고
계	246,926,516	246,926,516	81,803,150	165,123,366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신탁·환매채) 잔액증명서

고객용

발급관리번호 : 0019673186

2022- 0240844

발행일 : 2023년 02월 14일 (10:00:04)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귀하

예금종류	계좌번호	잔액(원)	미결제타점권(원)	관련대출, 질권(천원)
		입류관련사항	최근질권해제이력(1개월)	비고
NH주거래우대기업	301-0252-7728-11	₩123,437,436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2-7737-11	₩41,265,07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2-7738-51	₩355,20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보통예금	301-0259-2638-91	₩65,660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합 계		₩165,123,366	₩0	0

2023년 02월 10일 현재 고객님 명의의 예금(신탁·환매채) 잔액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잔액합계 : 일억육천오백십삼이만삼천삼백육십육원

은행감사직인

명인인장

농협은행

청양시청 <출>

주) 1. 이 증명서는 준법감시책임자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2. 잔액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영업점장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3. 발급기준일 당일에는 해당 예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4. 미결제타점권, 관련대출·질권, 입류관련사항, 최근 질권해제이력(1개월)은 2023년 02월 10일 기준입니다.

* 최근 질권해제이력(1개월)은 법인계좌만 표시됩니다.

본 잔액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 홈페이지 (<http://banking.nonghyun.com/>) 초기화면의 "빠른조회서비스"에서 잔위확인 가능함

1/1

1015 | 1010025 | 2017. 8. 시행 | 한국소문사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제정) 1998. 08. 22.
(일부개정) 2019. 05. 27.
(일부개정) 2019. 09. 30.
(일부개정) 2020. 07. 13.
(일부개정) 2021. 09. 0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충청남도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사안을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공동 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사업
2. 지방자치단체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3.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개정·폐지 및 국가정책에 관하여 의견개진 및 건의
4.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5.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의회는 자격은 충청남도의 시장·군수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임기개시와 동시에 회원이 되며, 퇴임과 동시에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협의회는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표결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부 회 장 2인 (개정 2020. 7. 13.)
3. 사무총장 1인
4. 감 사 1인

제8조(선출 및 임기) ①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감사는 각각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는 7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6월 30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보궐 선출에 의한 경우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무) 본 협의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은 본 협의회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과 협의하여 사무국 운영을 관장한다.
4. 감사는 협의회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격월로 개최한다.
2.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회원 1/3 이상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제11조(의결) 협의회 특별한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적 회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사무국

제12조(사무국)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고, 시·군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 직원 복무 및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회계관리
2. 회의 운영 및 준비
3. 제4조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4. 유관기관과의 협의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6장 재 정

제14조(재원) 협의회는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자치단체 부담금
2. 특별회비, 기부금
3. 기타 수입

제15조(회비) ① 회비는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

- ② 회비는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하여야 한다.
- ③ 특별회비는 필요한 경우 정기회의에서 협의·결정한다.

제16조(회계연도)본 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세입·세출예산은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②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예산이 성립될 때 까지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의회는 집행예산은 정산하여 결산한다.

제18조(감사실시) ①감사는 매 회계 연도말 이후에 예산집행 등 협의회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한다.

②감사의 실시는 감사가 소속된 시군의 감사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칙)협의회 회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998. 8. 22.)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회칙은 서기 1998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30.)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7. 13.)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9. 07.)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1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